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개편과 활용 방안

김 은 주  
(통신개발연구원)

### ■ 차 례 ■

- |                  |                    |
|------------------|--------------------|
| I. 서 언           | IV. ITU의 개편: 주요 쟁점 |
| II. 국제기구의 기능적 특성 | V. 개편후의 ITU        |
| III. 개편전의 ITU    | VI. 제 언            |

### I. 서 언

다변화되어가는 국내외 정치, 경제 및 기술의 환경 속에서 세계는 더욱 상호의존<sup>1)</sup>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정부 역시 유엔의 가입과 함께 국제기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엔을 비롯한 유엔 전문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제 및 지역 기구는 *APT, CEPT, CITELE, ETSI, EUTELSAT, GATT, ICAO, INNARSAT, INTELSAT, IMO, ISO, ITU, OECD, UNDP*<sup>2)</sup> 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세계 각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상시체제 까지 구비·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서는 국제전기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있다<sup>3)</sup>.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란 128년 동안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sup>4)</sup>을 위해 170개가 넘는 많은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전문기구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ITU*가 급변하는 국제전기통신기술 및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2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추가전권위원회의(*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에서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그 기능과 구조를 대폭 개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ITU*-특히, *ITU*의 역사적인 개편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개편된 구조 및 기능을 고찰하여, *ITU*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국내 유관기관들이 개편된 *ITU*의 각종 구조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改編 前後의 *ITU*에 대한

1. R.O.Keohane & J.S.Nye (1989), *Power and Interdependence*, 2nd ed., (Boston : Little Brown), *passim*.

2. 각 기구의 명칭과 주요 기능은 <부록-1>참고.

3. 본 결과는 약 20여개 국가의 체신부 혹은 관련기관에 직접 설문 조사(1992.7)를 한 기초자료에 근거함.

4. Article 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ITU* 1982.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첫째, ITU를 포함한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기능적 특성 혹은 실용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둘째, 改編前의 ITU를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특성별로 분류·검토하며,

셋째, 127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추가’전권위원회의 (APP)를 통해 대폭적으로 실시된 ITU 구조 및 기능의 개편 과정에서 야기된 주요 쟁점을 고찰한 후,

넷째, 改編後의 ITU를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특성별로 요약하고, 국내관련기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제시해보았다.

## II. 국제기구의 기능적 특성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혹은 유엔 전문기구(UN Special Agency)의 하나인 ITU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활용하기 위해, 본고는 국제기구에 대한 여러 특성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크게 세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첫째, 국제기구는 회원국 대표가 서로 한자리에 모여 “의 건 혹은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타협하는 會議(conference / forum)”<sup>5)</sup>로서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의 전형적인 기구로서는

GATT<sup>6)</sup>를 들 수 있다. 이 특성은 다시 세부적으로 “의사결정 방법(예, 투표제 혹은 의견일치제); 그리고 회의 자체의 범위, 기간, 위계”<sup>7)</sup>등의 차원에서 각 국제기구마다 차이가 있다.

둘째,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및 재정적 자원으로 구성된 기관(즉, 구조)에 의해 특수한 기능을 여행 혹은 관리하는 體制(system / entity)”<sup>8)</sup>로서의 특성이 있다. 즉, 국제기구는 크게 분담금을 지불하는 ‘회원국의 대표’<sup>9)</sup>와 다국적 출신의 ‘국제공무원인 직원’<sup>10)</sup>을 중심으로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구의 설립 목적에 따라 관리 혹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란 主權국가들로 구성된 조직체이므로, 그 내부에서 법정부적 정책이 상호 조정되기도 하고 협조<sup>11)</sup>를 형성하는등 정치적 선택을 띄게된다.

셋째,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 혹은 기능이 법적차원에서 회원국과 상호연계되어 있는 國際制度(international regime)로서의 특징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GATT를 일컬어 국제기구라기 보다는 국제제도’<sup>12)</sup>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제도의 범위는 완성된 국제기구법 혹은 국제법 그 자체의 결과를 각 회원국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이 일련의 원칙 혹은 규칙을 決定하는 過程<sup>13)</sup>”의 측면도 중요하다. 이는 곧, 국제제도 (혹은 기구)는 회원국의 국내정책 혹은 관련 분야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회원국 자체가 국제

5. M.Bertran (1989), *The Third Generation World Organization*, (London : Martinus Nijhoff), pp.43-44.

6. D.W.Bowett (1982), *The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London : Stevens & Sons Ltd.), pp.117-8.

7. J.Kaufmann (1988), *Conference Diplomacy: An Introductory Analysis*,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pp. 12-54.

8. C.Perrow (1976), *Organizational Analysis: A Sociological View*, (London : Tavistock), *passim*.

9. J.Kaufmann (1988), *op.cit.*, pp.114-132.

10. Y.Beigbeder (1990), ‘Administrative and Structural Reform in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Family’ in C. De Cooker (ed),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Law and Management Practices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London : Martinus Nijhoff), pp. II.4 / 1-31.

11. R.O.Keohane & J.S.Nye (1974), ‘Transgovernmental rela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Politics*, m Vol27, No.1, pp.39-62; F.Kratochwil & J.G.Ruggie (1986), ‘International roganization : A state of the art on a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0, No.4, PP.753-775; & P.J.Katzenstein (1975),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 Some long - term trends and recent chang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9, No.4, pp.1021-34.

12. D.W.Bowett (1982), *op.cit.*, p.117.

13. R.O.Keohane (1982),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6, No.2, pp.325-355; S.D.Krasner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D.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 (London / Itaha : Cornell University Press); E.J.Noveotny (1988), ‘Global Networks and Global Polotics :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an international regime,’ Paper presented to the XIVth World Congress of the IPSA, Washington, D.C., September 1988.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됨으로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다.<sup>14)</sup>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이외 국제기구 자체의 권한에서 限界가 있고 그 기능역시 制限的<sup>15)</sup>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 및 유엔 전문기구의 운용의 기능은 주로 선진국이 제공하는 자발적 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의존 관계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結果로서의 국제제도 그 자체는 국내제도에 비해 구속력은 혹은 집행력이 미약하여 회원국(특히, 강대국)이 이를 看過할 수도 있고<sup>16)</sup>, 타협의 過程으로서 국제제도는 회원국간의 정치·경제 또는 기술적 차원에서 갈등<sup>17)</sup>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雙務 혹은 地域 차원의 외교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각 회원국(특히, 창시국인 선진국 혹은 패권국)의 개대와 영향력이 축소되어가고, 각종 言語를 구사하는 100여개 이상의 회원국에 의한 비대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최근 UNESCO<sup>18)</sup>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가 심각한 財政難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실용성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이러한 주요 特性과 限界性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되며, ITU에도 예외는 아니다.<sup>19)</sup> 그러나, ITU는 다음과 같이 다른 일반 국제기구와의 差異가 있다.

### Ⅲ. 개편전의 ITU

1865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선 전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이 무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무선 통신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오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재탄생한 것은 1934년이며,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은 기존의 體制를 형성하면서 명실공이 국제기구-특히,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은 1974년 개최되었던 Atlanta City 전권위원회회의였다.<sup>20)</sup>

사실, 개편하기 이전의 ITU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 혹은 차원의 會議 및 常設機關으로 구성되어있다.

#### 3.1. 會議로서의 ITU

전기통신 분야의 '특정 주제'<sup>21)</sup>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會議로서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 약 5~6년마다 개최되어 사무총장 외 여러 선출직 직원과 관리이사국을 선출하고 필요시 연합의 기본법을 제·개정하는 전권위원회회의가 있고, 부정기적으로 필요시 의제에 따라 개최되어왔던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와 세계전신전화주관청회의(WATTC) 등이 있었다. 또한, 5개의 지역(아.태; 서유럽; 동유럽; 미주; 아프

---

14. R.O.Keohane & J.S.Nye (1978),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er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4, 719-753.

15. H.K.Jacobson (1974), 'ITU: A pot pourri of bureaucrats and industrialists' in R.W.Cox & H.K.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passim*.

16. K.W.Deutsch (1968),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pp.158-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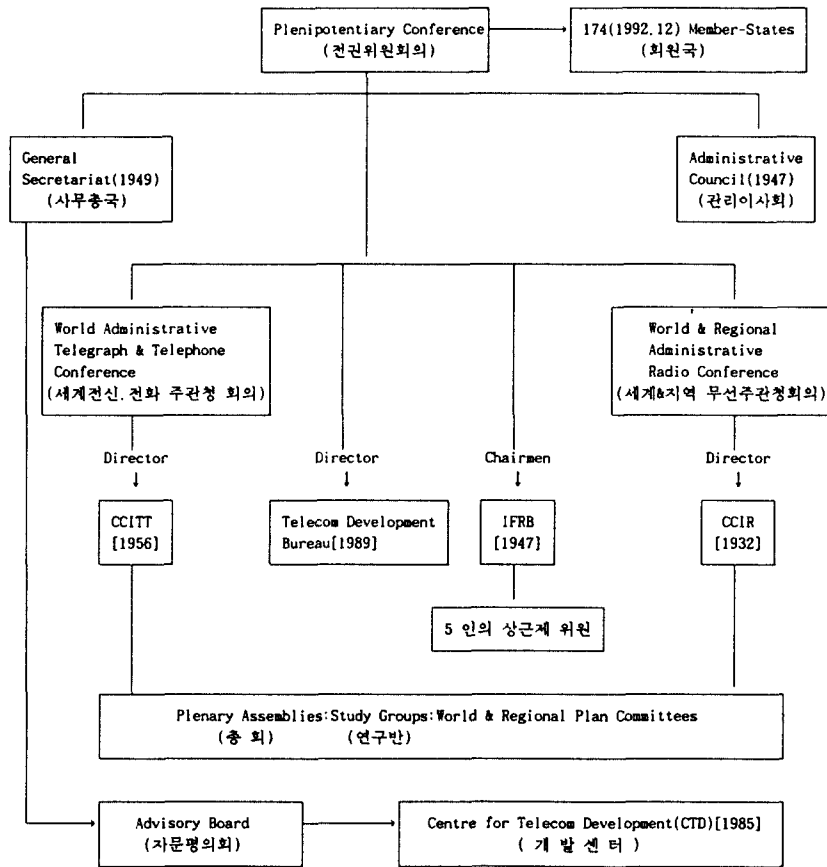
17. S.D.Krasner (1985), *Structural Conflict: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ssim*; & L.McKnight (1987), 'Technical standard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18. UNESCO는 극단적인 예로서 1980년대 중반 총 분담금의 약 30%를 차지했던 미국과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재정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 *Pace-UK Report on UNESCO*, July 1984; *Pace-UK Report on UNESCO*, January 1985; and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and Committee on Science & Technology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S*, the Comptroller General, November 30, 1984.

19. 김은주 (1990a), '한국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상호연계성 고찰,' 인간 커뮤니케이션 사회구조, 보성사 pp. 174-205.

20. E.J.Kim (1990b), *Dynamic Interlinka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rough Evolving Telecommunications Issue-Structures*, Ph.D. Thesis, (London: The City University), *passim*.

21. 회의의 '범위'는 다시 ITU와 같이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경우와 유엔 총회와 같이 광의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로 구분하기도 한다. J.Kaufmann (1988), *op.cit.*, pp.46-47.



資料 : [ ] 안의 연도는 각 기관이 설립된 해.

그림 1. 개편전 ITU 체제

리카)에서 선출된 43개국<sup>22)</sup>으로 구성된 관리아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연합의 회의일정, 예산, 인사등 행정적인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러한 여러 회의의 개최 '期間'은 각 회의 마다 상이하지만, 한때 전권위원회는 약 2개월<sup>23)</sup> 동안 개최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전권위원회와 WARC는 약 5주, 그리고 WATTC, CCIR, CCITT 및 관리아사회는 약 2주동안의 회의를 각각 개최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 (예, 오전 및 오후)회의 외에 야간회의(예, 19:00 - 24:00)도 종종 개최되고 있다.

22. 독일의 통일로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에 따라 동유럽 지역에 공식이었던 관리아사국으로 루마니아가 1992년 12월

추가전권위원회에서 선출되어 현재 43개국이 됨.

23. 유엔 혹은 국제기구를 '회의 기간'별로 분류하면 :

1주 이내의 斷期間 회의	EEC, GATT의 이사회 혹은 위원회
1-3주 사이의 中間期間 회의	WHO, ILO, ITU 등의 이사회
3주 이상의 長期間 회의	UN 및 유엔 전문기구(예, ITU)의 총회

J.Kaufmann (1988) *op.cit.*, pp.49-53.

회원국<sup>24)</sup> 혹은 참여자<sup>25)</sup> 數로서 회의 '규모'는 20개국 이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20~40개국 정도의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등과 달리, ITU는 1992년 12월 당시 약 174개의 회원국이 가입해있었고, 참여자의 수는 43개국에서 참석한 약 160여명 규모의 관리 이사회, 약 130여개국에서 참석한 1000여명 이상의 규모인 WARC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政府간 기구이면서도 ITU는 대표단(delegation)의 구성이 정보 대표뿐만 아니라 회원국이인칭한 공인된 민간운영기관 (Recognized Private Operating Agency) 및 과학 산업 기구(Scientific & Industrial Organization)의 자격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일부 관련회의(예, CCITT & CCIR 회의)에 참여<sup>26)</sup>하고 있다.

또한, 會議로서의 국제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회의 진행(혹은, 의사결정)의 절차규칙 가운데 '투표권' 혹은 '투표행위'가 있다. 실제, 투표제도는 국제기구마다 차이<sup>27)</sup>가 있고 ITU 내부에서도 時代別<sup>28)</sup> 및 會議別로 차이가 있다. 즉, ITU의 경우 현재 '1 국가 1 투표제'<sup>29)</sup>를 실시하고 있으나 1973년까지만 해도 1 국가가 식민지 국가들의 수 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加重 투표제'<sup>30)</sup>를 실시했었다. 특히, WARC에서 주과수 함당을 결정할 경우에는 '先者先惠 原則 (first come first-served)<sup>31)</sup>'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TU의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제(consensus rule)<sup>32)</sup>'를 기초로 하며, 투표는 회원국간에 의견이 강하게 대립되거나 일부 회원국들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sup>33)</sup>에 실시하고 있다.

### 3.2. 體制로서의 ITU

體制로서는 선출된 사무총장(P.Tarjanne : 핀란드) 및 차장(J.Jipgeup : 카메룬)을 중심으로 현재 약 445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총장과 5인의 상근제 선출된 위원<sup>34)</sup>과 약 122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주과수 등복위원회(IFRB)가 있었다. 또한, 1인의 선출된 위원장(T.Armer : 독일)과 42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질신전화자문위원회(CCITT)와 1인의 선출된 위원장(R.Kirby : 미국)과 30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각 사무국 외에 매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Plenary Assembly)와 기의 연중 개최

24. 회원국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워관회원 등 국제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ITU의 경우는 정회원제 중심.

25. ITU와 같이 정부간 기구 혹은 유엔 전문기구일 경우, 참여자의 '종류'는 주로 외부부 혹은 재선부와 같이 정부 대표가 delegate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 delegate를 대리하거나 자문을 해주는 유관 기관의 참여도 허용됨.

26. 주관청 이외의 RPOAs와 SIOs의 자격으로 CCIR과 CCITT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기관의 수는 1989년 당시 각각 99와 225개 기관에 다름. ITU (1989),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to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ice*, p.56.

27. 예, ETSI와 같은 기구는 '가중 투표제(Weighted National Vote)'를 실시. ETSI (1992), *Reference Documents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Technical Basis for Regulations ETSI Technical Reports, GSM Specifications*, p.vi.

28. 1950년대만 해도 프랑스의 경우 자국의 투표권 이외 식민지 국가들(예, 인도네시아, 모로코 등)을 대리하여 7개 이상의 투표권을 소유했었음. G.A.Codding Jr. (1952),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 Experi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Leiden : E.J. Brill), p.41.

29. Article 77 / 13, *op.cit.*, 1982, p.75.

30. G.A.Codding Jr (1984), 'Politicization of the ITU : Nairobi & After' in V.Mosco (ed.), *Policy Research in Telecommunications*, (New York : Ablex), pp.436-8.

31. E.J.Kim (1990b), *op.cit.*, pp.116-117.

32. D.Williams (1987), *Specialized Agencies & the UN: The System in Crisis*, (London : C. Hurst & Company), p.78.

33. Article 77 / 14, *op.cit.*, 1982, pp.75-78.

34. 1992-3년간 위원 구성 :

위원장	M.Miura	일본
부위원장	M.Harbi	알제리아
위원	W.Bellchambers	영국
	G.Brooks	캐나다
	V.Kozlov	소련

되는 각종 연구반 회의가 있다. 한편 1989년 설립되어 69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개발국(BDT)은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국장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는 곧, ITU의 常設機關은 1992년 12월 당시 총 811인의 선출직, 영구 및 시간직 직원<sup>35)</sup>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직원은 국제공무원의 자격으로 출신국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ITU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sup>36)</sup>. 사실, 국가간의利害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국제공무원의 공정성, 객관성, 혹은 독립성의 보장은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TU의 직원들은 '특권과 면제'<sup>37)</sup>가 보장되어 있다. 특히, ITU와 다른 국제기구의 차이점 가운데 ITU가 유난히 선출직 직원이 많다<sup>38)</sup>는 점이고, 그 이유는 ITU 조직자체가 연방제(federal structure)적인 특성을 유지·발전시켜왔다는 데 기인한다.

이처럼 복잡한 構造로 구성된 ITU의 주요 목적은 모든종류의 전기통신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회원국들 사이에 국제협력을 유지·확대하고<sup>39)</sup>,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기술원조를 증진<sup>40)</sup>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TU는 크게 立法的(legislative), 行政的(administrative), 그리고 運用的(operational) 機能을 하고 있다. 즉, 입법적 기능으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합의 목적, 구조 및 기능을 규정한 국제전기통신 헌장 및 국제전기통신협약<sup>41)</sup>,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및 운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국제전기통신규칙<sup>42)</sup>, 전파에 관련된 각종 개념 및 주파수 할당 등에 관한 전파규칙<sup>43)</sup>, 그리고 각종 권고(혹은 국제표준)를 제·개정하고 있

다. 행정적 기능으로는 연합의 예산 및 인사문제를 관리하고 각종 회의 및 TELECOM과 같은 전시회 혹은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운용적 기능으로는 개도국에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 분야에서 最多 회원국을 지닌 ITU의 특성 및 전통을 살려 각종 기술 및 정책 자료, 정기 간행물, 그리고 지표 등을 출판하기도 한다.

표. 1 ITU의 법적체계

ITU의 법체계	법적 성격	제·개정 기관
국제전기통신헌장①	국제조약	구 전권위원회
국제전기통신협약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국제조약 수준	적 — WATTC
전파규칙(RR)		— WATTC
권고(혹은표준)	임의적	CCITT & CCIR 총회②

① 1982년 Nairobi 전권위원회의까지 ITU의 기본법은 협약이었으나, 1989년 Nice 전권위원회의에서 기본법체제를 二元化하여 헌장은 기본 사항만을 규정하여 계속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협약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대응하여 개정이 용이하도록 개정했음.

②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신속승인절차를 채택하여 우편으로도 권고승인이 가능해 짐.

### 3.3. 國際制度로서의 ITU

국제제도로서의 ITU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입법적 기능에 관련된 기관 및 그 법적 효용순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즉, 국제조약으로서 전권위원회의에서만 제·개정이 가능한 헌장과 협약이 충돌할 경우, 헌

35. ITU의 정규 채용된 직원은 크게 Senior Counsellor (D 2-1급), Professional (P 5-1급), General Service (G 7-1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최고직인 D2급은 부재. ITU (1991a), *Staff Regulations & Staff Rules*, Geneva, 1969, (reissued), pp.7-8.

36. ITU (1991a), *op.cit.*, p.2; & ITU (1991b), *Staff Regulations & Staff Rules for Electec Officials*, Geneva, 1974, (reissued), p.2.

37. ITU (1991a), *op.cit.*, p.5; & ITU (1991b), *op.cit.*, p.3. S.Tarassenko & R.Zacklin (1990), 'Independence of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in C.de Cooker (ed.), *op.cit.*, pp.III.1 / 1-15에서는 국제공무원의 독립성을 위해 특권과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38. 1992년 12월 APP 以前, 선출직 직원으로서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CCITT & CCIR의 위원장, 그리고 5인의 상근제 IFRB위원 등 총 9인.

39. Article 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Malaga-Torremolinos, 1973.

40. Article 4, *Internationa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1982*년에 새로운 목적으로 채택됨.

41. ITU (198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1993년 1월 현재까지 Nice 전권위원회의에서 二元化 시킨 헌장 및 협약이 발효되지 않아 ITU의 기본법은 아직 Naibobi 협약.

42. ITU (198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Melbourn.

43. ITU (1990), *Radio Regulations*, Geneva.

장은 협약에 법적으로 우선하며, 협약은 또한 국제전기통신규칙(ITR)과 전과규칙(RR)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 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에 우선하게 된다.

특히, 國際制度로서의 ITU는 국제법적(de jure)으로 구속력을 지닌 國際條約(international treaty)과 條約次元(treaty level)의 국제전기통신 憲章, 協約 및 運營規則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임의적 법규이지만 170여 회원국 사이에 실질적(de facto)으로 적용되는 勸告(혹은, 標準)을 CCITT와 CCIR 총회에서 승인 혹은 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 기술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1988년 CCIR 및 CCITT 총회는 각기 우편(by correspondence)에 의한 권고 승인 방안을 채택하여 빠르게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실제, 오늘날 선진국의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도의 기업표준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의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개도국 혹은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들도 여러 선진국의 기업들로 부터 수입한 기술, 표준 및 제품에 불가피하게 종속될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이 국내 공존 함으로써 상호호환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ITU의 표준과 같은 국제표준은 국내표준을 자체적으로 개발·개정하기 어려운 많은 개도국이 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실제 ITU 標準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ITU의 표준화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원국은 미국과 일본 등 극히 일부 국가 혹은 그들의 기업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 IV. ITU의 개편 : 주요 쟁점

127년이라는 ITU의 장구한 역사상 처음으로 1992년 12월에 개최된 '추가'전권위원회의를 통해, 1947년 이래 유지해온 ITU의 각종 會議 및 體制, 그리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헌장 및 협약을 대폭적으로 개편<sup>44)</sup>하게된 주요 동기중에 하나는 급변하는 전기

통신 환경속에서 ITU가 전기통신을 관할하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주도적 위상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5)</sup>.

그러면, ITU는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크게 構造 및 機能의 측면의 복합적인 개편이라 특징지을 수 있다.

構造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기존의 會議 및 常設機關을 그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여 크게 3분야(Sectors : 전파통신, 전기통신 표준화 및 개발)로 개편하였다. 이는 복잡한 ITU를 관련 분야별로 통폐합하여 수직적 구조인 각 분야에 귀속시키고, 사무총장의 총체적인 관리기능을 통해 각 분야를 조정함으로써 ITU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조정위원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3분야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ITU의 새로운 연방제적 구조(federal structure)의 조정을 의도한 것이다.

機能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上記 주요 3분야의 기능 이외에 사무총장 산하에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World Telecommunication Advisory Council) 및 정책·기획과(Strategic Policy & Planning Unit)의 신설 및 각 분야에 자문만 혹은 자문위원회를 신설 혹은 강화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ITU 특히, 사무총장 자체가 전기통신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기획을 수립 및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이 제안한 의제만을 집행 혹은 관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는 회원국들 치립 寄稿(contribution / proposal)을 제출하거나, 특정한 정책 방향 혹은 권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構造 및 機能의 개편을 반영한 ITU의 헌장 및 협약은 법적으로 1947년 7월 1일 발효<sup>47)</sup>된 예정이지만,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의 체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헌장 및 협약에 따라 통폐합 혹은 조정된 새로운 체제를 1993년 3월 1일부터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

44. Document 77, APP-92, ITU, Geneva, December 7 1992.

45. ITU (1991),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p.5.

46. 김은주 (1991a / b), 'ITU의 고위위원회 현황과 국내대응 (I / II)', 국제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No.19, pp.3-19 & No.20, pp.3-38.

47. Article 47 of the Constitution, *op.cit.*, ITU,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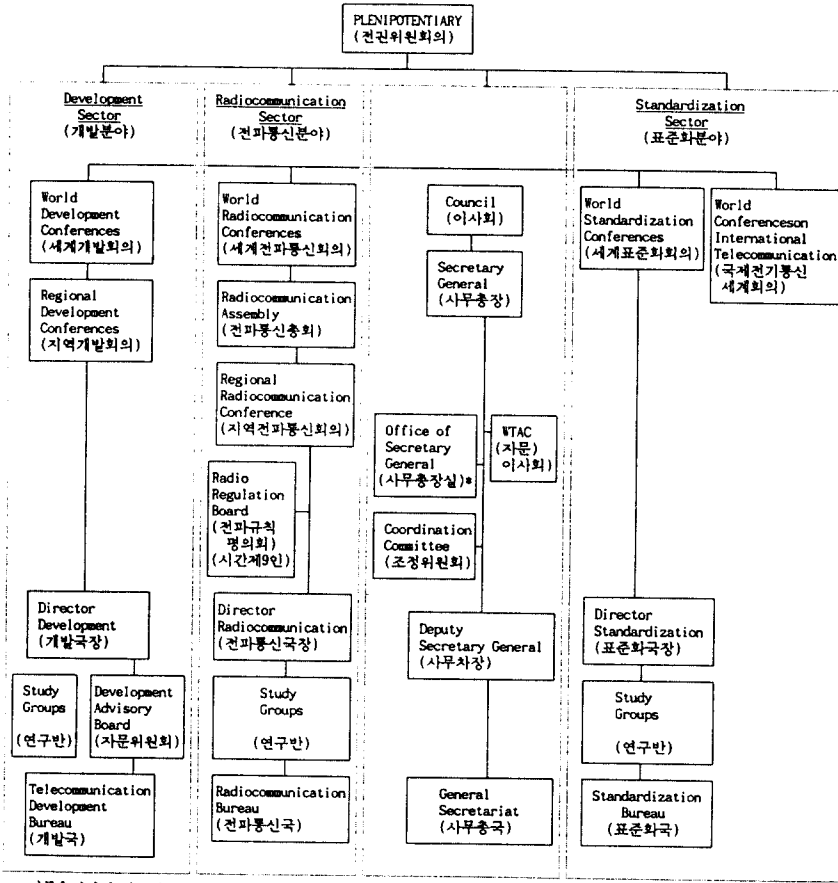


그림 2. 개편전 ITU 체계

(PLEN/8)<sup>48)</sup>를 채택했다. 그러면, 각 분야별 구조 및 기능의 개편에 따라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채택된 결의는 분야별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4.1.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

ITU의 대폭적인 개편에 효시가 된 주요 동기는 유·무선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및 접목에 따른 전파 및 전기통신 분야의 업무 중복뿐 아니라, 국내 및 지역 표준화기구들(예, ETSI, T1 Committee, TTC)의 신설

및 기능강화, 국내외 통신정책의 자유화 및 민영화 등으로 민간분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170여 회원국을 보유한 광대한 조직체인 ITU가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의 CCIR과 CCITT의 표준화 기능을 통합하여 표준화 분야를 신설하고 매4년 주기로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개최 초기 집행을 위한 결의(PLEN/8)에 따르면, 현재 CCITT의 위원장

48. Resolution PLEN/8, Provisional Application of certain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Final Acts of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Geneva*, ITU, 1992.

49. Chapter III of the Constitution & Section 6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이 1994년 Kyoto 전권위원회에서 새로운 표준화 국장을 선출하기전까지 국장직을 대행하되 1989년 Nice 전권위원회에서의 선출을 제1회 임기로 간주하게된다. 따라서, 1회에 재임이 가능한 현 규정<sup>50)</sup>에 준하여 1994년 재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199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10차 CCITT 총회를 '제1차 세계표준화회의'로 개칭하여 핀란드에서 열리게 된다.

동 분야의 개편에 대해 APP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서는 과연 기존 CCIR과 CCITT의 표준화 작업을 어떻게 조정하며 연구반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전기통신 표준화분야의 주요 기능은 전기통신 부문에 관련된 표준을 제·개정한다는 기본 골격<sup>51)</sup>하에, 전파통신 연구반의 주요 연구 과제는 지상 및 우주 전파통신의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무선체계의 특성과 성능, 무선 지구국의 운용, 장애와 안전에 대한 전파통신 문제 등이며, 반면에 전기통신 표준화 연구반의 주요 연구 과제는 기술, 운용, 요금 문제 등으로서 공중전기통신망에 무선체계의 상호접속 및 성능에 관한 권고를 각각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양 분야의 경계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들이 많아 해당 분야에서 심도있는 후속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결의(COM 4/1)를 채택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연구반의 통폐합 문제 등은 1993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특별자문반 회의에서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세계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의했다<sup>52)</sup>. 동 자문반 회

의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CCIR의 연구과제 가운데 고정 위성통신 등 5개 과제가 표준화분야의 연구반에 흡수·통합<sup>53)</sup>되도록 결의했으나, 표준화분야의 구체적인 절차 규칙 및 연구반의 과제 분배는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서 최종 승인·결정하도록 했다.

4.2. 전파통신 분야

개편 전부터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분야로서, CCIR의 일부 표준화 기능을 표준화 분야로 이양한 후 모든 전파부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전파통신분야라는 구조 속에서 조정을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및 CCIR의 기능을 통폐합한 전파통신분야 산하에, 세계 및 지역 전파통신회의(World & Regional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전파규칙평의회(Radio Regulation Board), 전파통신총회(Radicommunication Assembly), 연구반,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출된 局長<sup>54)</sup>을 중심으로 電波通信局을 상설화하게 된다<sup>55)</sup>.

동 분야의 개편 가운데 특히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4.2.1. 세계전파통신회의(WRC)와 전파통신총회(RA)

부정기적으로 필요시 주요 이슈별로 개최되어오던 WARC<sup>56)</sup>의 구조 및 기능을 개편한 WRC와 매4년마다 개최되어오던 CCIR 총회를 개편한 RA는 전파분

50. CV6F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51. 김은주 (1992a), 'ITU 기본법 개정 및 국내대응'(상/하),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No.6 & 7, pp.45-53 & 83-93.

52. Resolution COM4/1, Allocation of work to the Radiocommunication Sector and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op.cit.*, ITU, 1992.

53. Document JCCI-1/9 (Rev.1), ITU, January 21 1993.

54. 전파통신 국장직의 개편 및 조기집행 사항은 표준화 국장직과 동일.

55. Chapter II of the Constitution & Section 5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56.

WARC	1959(SATELLITE COMMUNICATIONS) ; 1963 (SPACE RADIOCOMMUNICATIONS) ; 1971 (SPACE TELECOMS) ; 1977 (BROADCASTING SATELLITE SERVICES) ; 1979 (GENERAL ISSUES) ; 1984 & 1987 (HFBC) ; 1983 & 1987 (MOB) ; 1985 & 1988 (ORB) ; 1992 (GENERAL ISSUES)
------	---

야의 이슈를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2년 주기로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도국과 같이 대표의 수가 적어 회의가 중복 개최할 때 참여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두 회의사이에 시차를 두고 개최하도록 결정했다. 각 회의의 주요 機能으로서, WRC는 주로 기존의 WARC과 같이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의 제·개정을 하게되며, RA는 기존의 CCIR 총회와 유사하게 전파분야의 技術標準을 제·개정하고 연구주제를 설정하며 이에 따른 연구반을 통폐합하게 된다.

전파분야 역시 업무를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1994년 개최 예정이던 CCIR의 18차 총회를 1993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제 1 차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 1 차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로 개편하여 제네바에서 개최하게 된다<sup>57)</sup>.

그러나, 1993년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WRC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도록 결의했다:

①이사회로 하여금 Voluntary Group of Experts<sup>58)</sup>가 간소화를 추진하고있는 전파규칙(RR)의 개정 문제 및 이동-위성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대역의 이용 촉진의 지침 등 1995년 WRC 의제를 선정하도록 권고를 제정하고,

②1997년 WRC의 의제 준비를 위한 권고를 제정한다.

한편, 1993년 WRC와 연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주기로 개최하게될 RA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의제를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①연구반의 재구성 과 전략 검토를 하도록 설립된 자문반<sup>59)</sup>의 권고를 검토하고,

②WARC-92의 결의 제 523 호의 적용에 관한 IFRB 보고서 및 단파방송에대한 미래 업무 등 새로운 전파통신분야를 위한 연구반의 구성 문제와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③우편방식에 의해 채택할 수 없었던 CCIR 연구반의

보고서 및 권고 초안을 심의하고,

④권고승인 절차<sup>60)</sup>의 개정에 대해 심의한다.<sup>61)</sup>

#### 4.2.2. 시간제 전파규칙 (RRB)

추가전권위원회에서 가장 역사적인 결정이라면, 1947년 11인의 상근제 위원으로 설립된 이후 1965년 5인의 상근제 위원으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던 IFRB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9인의 시간제 위원에 의해 연 4회 정기모임을 통해 운영될 전파규칙평의회(Radio Regulation Board)로 개편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1947년 IFRB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중간단계인 관리 및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설립되었다. 그 설립 의도와 달리 IFRB의 권한이 미약하였고, IFRB위원 선출분제로 인해 종종 남-북간 마찰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설립이후 구조 및 기능에 관해 몇 차례 개편 혹은 폐지의 대상<sup>62)</sup>이 되었었다. 최근 고위위원회(HLC)는 절차규칙과 기술기준이 완비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업무가 단순화되고 그 업무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의 이용을 통해 전문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고액의 임금을 요하는 5인의 상근제 위원에 의한 IFRB의 협의체적 기관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제 RRB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제 위원으로 구성되는 RRB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 및 후진국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IFRB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IFRB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특히 알제리아는 주파수와 정치위성계도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IFRB에 의한 협의적 의사결정제도(collegiate decision-making system)의 유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sup>63)</sup>고 주장하였다.

한편, 쿠웨이트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많은 주파수대 이용에 관한 분쟁을 발생시키며, 따라

57. APP 회기중에 추가로 개최된 제47차 관리이사회(1992. 12. 20)에서 결정.

58. Resolution PLEN / 1. Voluntary Group of Experts to Study the Allocation and Improved Use of the Radio-Rrequency Spectrum and the Simplification of the Radio Regulations, *op.cit.*, ITU, 1992, 참고.

59. CCIR Resolutions 106 & 107, ITU, 1988.

60. CCIR Resolution 97, *op.cit.*, ITU, 1988 & Resolution COM4 / 2, Approval of Recommendations, *op.cit.*, ITU, 1992.

61. Resolution PLEN / 4,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1993, *op.cit.*, ITU, 1992.

62. George A Coddling, Jr. & Anthony M. Rutkowski (1982),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 a Changing World*, (London : Artech House, Inc.), p.119.

63. Doc. 40, Algeria Proposals for the work of the Conference. ITU APP-92, Geneva, December 1992.

서 상설기관으로서 IFRB 존속의 필요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보다 더 요구된다<sup>64)</sup>고 그 반대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란 역시 IFRB가 지난 기간동안 유한 친연자원인 주파수대와 정치위성체도의 이용에 있어 개도국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하여 왔고, 시간제 위원은 개도국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주파수대와 정치위성체도의 효과적 이용이 IFRB의 비용절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65)</sup>.

이러한 반대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즉, IFRB가 지금까지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IFRB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독립된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혹은 회원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 위원들이 공평한 지역배분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제이기 때문에 회원국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동 위원을 시간제로 선출하고 또한 그 자격을 단지 전파통신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추고 주파수 할당과 이용에 관한 실질적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규정할 경우, 실제 고도의 전파통신 관련 전문가가 재한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동 위원들이 주로 선진국 (특히, 특정 기업) 출신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제도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시간제 위원으로 구성되는 RRB로 개편을 찬성하는 유럽 국가들은 공동제안에서 시간제 RRB의 비용-효과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IFRB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RRB에서도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sup>66)</sup>에 그 방안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렇게 찬반론이 강하게 대립되었으나, 결국 IFRB는 9인의 시간제위원에 의해 년 4 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RRB로 개편되었다. 동 위원들은 이러한 정기회의 이외에 WRC 등 전파통신 관련회의에 사분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며, 전권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

장이 사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또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정부에 관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하며, 본국 정보대표단의 일원으로 상기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동 결정에 대해 많은 대표들이 불만을 표명했기 때문에 1994년 전권위원회(Kyoto)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RRB의 경우, 조기 집행을 위한 결의(PLFN/8)에 따르면 1994년 Kyoto 전권위원회에서 9인의 시간제 위원을 선출하여 임기 개시일을 결정할 때까지 현 IFRB 5인의 상근제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 IFRB 위원 가운데 공석이 발생할 경우 1994년 회의까지 재선출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 4.3. 전기통신 개발 분야

국제 전기통신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격차가 심화 되어감에 따라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활발히 촉진함은 물론 재정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전기통신 발달의 격차를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개발분야가 설립되었다.

전파통신 및 표준화 분야가 선진국들의 場(forum)이라면, 개발분야는 개도국의 場(forum)으로 간주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개발분야의 구조와 기능은 개발업무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게될 세계개발회의 및 지역적 특성과 특정한 요구에 따라 개발국에 권고를 제시하게 될 지역개발회의, 개발사업 중심으로 필요시 구성하게될 연구반, 그리고 선출된局長을 중심으로 상설·운영되는 開發局 이외에 국장을 모좌하게될 諮問委員會를 신설<sup>67)</sup>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유인하고 개도국의 전기통신 시설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 전권위원회에서 1989년 이래 사무총장이 직무대행을 해오던 開發局長職에 인도네시아의 A.Dijwatampu가 선출되었다<sup>68)</sup>.

64. Doc.154, Summary Record of the 8th Meeting of COM / 4, ITU APP-92, Geneva, December 1992.

65. *Ibid.*

66. CS86E "특히 전파규칙평의회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정부에 관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CV116B "위원은 본국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상기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Doc.27, European Common Proposal for the work of the Conference, ITU APP-92, Geneva, December 1992.

67. Chapter IV of the Constitution & Section 7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68. 개발국장 후보에 현 사무차장 및 APT 사무국장 등 총 8인이 임후보하여 열띤 경쟁을 보였으며, 총4회의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ITU 사무차장과의 마지막 선거에서 인도네시아의 대표가 선출됨.

이러한 개발분야의 개편을 개도국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기존 UNDP등의 자발적 기금에 의존하여 기술원조 사업을 제공하던 기능을 정규상설기관인 개발국을 중심으로 ITU 정규 예산<sup>69)</sup>에서 활용하게 되었고, 개도국의 통신 시설 발전과 같은 실질적인 개발사업(예, 개도국이 요구하는 Project-Oriented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개도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만족시켜주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선진국 혹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의 입장에서 고찰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원을 제공한다는 단면 보다는 개발 사업을 제공하는 전문가 혹은 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제고할 뿐 아니라 개인 혹은 소속기관의 이름을 홍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시장개척의 입문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 회의에서 선출된 개발국장은 1993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게되며 다른 분야의 국장들과 달리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9월 Kyoto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은 제 1 회 선출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sup>70)</sup>. 한편, '제 1 회 시계개발회의'는 1994년 1/4분기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sup>71)</sup>될 예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개발국장은 다른 분야의 국장들과 협의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결의했다<sup>72)</sup>. 또한, 1993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태지역 개발회의가 개최되며, 이에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동 지역의 TELECOM 행사가 열리게 된다.

#### 4.4. 정책 기획 및 행정 분야

##### 4.4.1 常說機關

주요 기능별 3분야의 상설기관 이외에, 사무총국내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면서 ITU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될 기획조정과(SPPU)와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체의 고위직에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요구를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통신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설한 세계전기통신자문이사회(WTAC)의 동향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편은 ITU-특히, 사무총장-자체적으로 전략적정책과 기획을 위한 구조 및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특성으로, 이미 신설되어 업무를 개시한 SPPU는 사무총장실내 상설기관으로서 정규 직원을 채용하여 ITU 전체의 지속적인 정책 및 기획을 수립하는 반면에, WTAC은 매년 1일 회의(forum) 소집을 통해 교환 및 정책 제안의 기능을 하게된다<sup>73)</sup>.

특히, 전략적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각 기능별 분야에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될 자문반(Advisory Group 혹은 Advisory Board)<sup>74)</sup>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실질적인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기관의 構成員으로서의 기존의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술력과 재력이 있는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 민간분야에 영향력있는 인물들의 참여를 장려·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요 機能으로서의 각 분야의 활동을 위한 우선권과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업무 집행의 진척을 검토하며, 연구반의 업무에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sup>75)</sup>하는 등 향후 각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69. ITU의 일반예산 가운데 개발국(BDT)에 할당된 예산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고, 그 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함을 주목: (단위: 2f)

	1991	1992	1993
개발국 예산	16,872,147 (13.4%)	19,323,000 (14.8%)	23,198,000 (17.4%)
일반예산	125,894,590 (100%)	130,145,000 (100%)	132,610,000 (100%)

채신부 (1992),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ITU 제47차 관리이사회, p.106.

70. 예, Dijwatampu가 1994 회의에서 재선 될 경우 제1회 임기로 간주하며, 차기 1998년 회의에서 재선이 가능하게 됨.

71. APP 회기중에 추가로 개최된 제47차 관리이사회(1992. 12. 21)에서 결정.

72. Resolution PLEN / 2, Priority Tasks of the BDT & Resolution PLEN / 3, Immediate Action by the BDT, *op.cit.*, ITU, 1992.

73. 예, 1992년 4월 제네바에서 제1회 모임을 소집했고, 1993년 5월 아·태지역 회의와 연계하여 제2회 모임을 소집할 예정.

74. CCIR Resolution 106 및 CCITT Resolution 18에 준하여 설립된 Ad Hoc Advisory Groups을 분야별로 활용.

75. Resolution PLEN / 6, Establishment of Advisory Groups for the Radio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s, *op.cit.*, ITU, 1992.

예상된다. 이러한 자문반의 구성 방법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1993년 1월 CCIR & CCITT Ad Hoc 자문반 공동 회의<sup>76)</sup>의 결과를 기초로 1993년 11월 분야별 세계회의<sup>77)</sup>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 4.4.2. 主要 會議

기능별 3분야의 세계 및 지역회의 이외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管理理事會(Administrative Council)는 聯合理事會(ITU Council)로 개칭<sup>78)</sup>하여, 연합 전체적인 관리 및 행정(예, 재무, 인사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며, 廣義의 정책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등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도록 개편<sup>79)</sup>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사회가 세부적인 사항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무국이 회원국에게 관련 문서들을 지연 배포하는 등<sup>80)</sup> 실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법적 개정만으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사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개선안을 제출(1992.10.15)했고, 이를 기초로 구성된 작업반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이사회(1993.6-7)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sup>81)</sup>.

현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취급하기 보다는 광의의 정책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5주간 개최되었던 전권위원회 회의의 기간도 4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sup>82)</sup>. 이에 따라, Kyoto 전권위원회의역할 일정을 변경하여 1994년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 개최하게 된다.

#### 4.4.3. ITU 활동의 참여 확대

ITU는 정부간 기구인 만큼, 주로 체신부를 중심으로한 정부가 ITU의 각종 회의-특히, 전권위원회의, 이사회 WARC, WATTC, CCIR 및 CCITT회의-에 참여해왔고, 사업자 및 연구소가 체신부의 승인을 받고 CCIR 및 CCITT의 연구반 회의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전기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관정(예, 체신부)뿐 아니라 국·공영 및 민간 사업자, 그리고 민간 제조업체와 지역 및 국제기구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sup>83)</sup>. 이에 대응하기 위해, ITU는 제도적으로 기존의 CCIs 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된 운영기관(ROAs)<sup>84)</sup>, 과학·산업 기구(SIOs) 이외에 관련된 재정기관, 지역 및 다른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및 개발기구들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sup>85)</sup>.

이와 같이 1992년 12월 개최된 APP를 통한 改編前後의 ITU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에서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과 국·공영 기구를 포괄하는 의미를 대표하도록 '민간'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킴. Annex of the Constitution, *op.cit.*, ITU, 1992. 85 Article 7D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 V. 개편후의 ITU

### 5.1. 機能的 特性

첫째, '體制(system)'로서 ITU의 개편이란 크게 3분야(예, 전파통신, 표준화, 개발)와 정책 기획의 구조 및 기능을 조정·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76. 동 회의에서 CCITT & CCIR (주, 표준화 및 전파통신분야)의 절차적 및 운영방법을 검토함. Document AP X-23, Report of the Ad Hoc Group the Xth Plenary Assembly, May 1992.

77. CV116U & CV122L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78. HLC Recommendation 16, *op.cit.*, ITU, 1991c.

79. HLC Recommendation 17, *Ibid.*; &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 Article 3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80. 김은주 (1992b), 전제서, pp.336-7.

81. 이사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귀고를 한 회원국은 미국, 스웨덴, 포르투갈, 한국, 독일, 말리, 프랑스, 캐나다, 칠레, 호주, 일본, 러시아, 케냐 등 13개국이며, 이 중 포르투갈, 칠레, 케냐 대신 멕시코와 스페인을 포함한 12개국으로 작업반이 구성 & 운영됨. Document 1, Draft terms of reference of the Working Group, ITU, 4 December 1992.

82. Resolution COM5/1, Duration of Plenipotentiary Conferences of the Union, *op.cit.*, ITU, 1992.

83. 김은주(1992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구조조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pp.165-183.

84. 기존의 공인된 민간운영기관(Recognized Private Operating Agencies)에서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과 국·공영 기구를 포괄하는 의미를 대표하도록 '민간'이라는 용어를 삭제시킴. Annex of the Constitution, *op.cit.*, ITU, 1992.

85. Article 7D of the Convention, *op.cit.*, ITU, 1992.

표. 2 改編 前後의 ITU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국내관련기관 참여자격 <sup>1)</sup>
전권위원회의	전권위원회의		4년주기로 단축 4주로 회의기간 단축	정부 : 외무부 & 체신부 ROAs: 한국통신 & 데이콤 SIOs : (현재-없음) 기타 : 연구소(ETRI & KISDI), TTA의
CCITT & CCIR	표준화분야	세계회의 연구반	개정&통폐합(매4년) 통폐합(수시)	체신부, ROAs중심 ROAs, 제조업체, 연구소
세계전신전화 주관청회의	국제전기통신 세계회의		개정(필요시) <sup>2)</sup>	정부, ROAs, 연구소
CCIR /IFRB & 세계 무선 주관청회의	전파통신분야	세계/지역회의 전파통신총회 전파규칙평의회 (RRB) 연구반	개정&통폐합(매2년) 개정&통폐합(매2년) IFRB의 개편(년4회) 통폐합(수시)	체신부, ROAs, 방송관련기관중심 체신부, ROAs, 제조업체, 연구소 외 9인의 선출된 시간제 위원 ROAs, 제조업체, 연구소 외
개발국	개발분야	세계/지역회의 자문위원회 연구반	신설(매4년) CTD의 개편(매년) 신설(필요시)	체신부 & ROAs 중심 개인(전기통신관련)자격으로 임명 체신부, ROAs, 제조업체 외
관리이사회	이사회		개정(매년)	정부 : 외무부 & 체신부 외
사무총국	사무총국	SPPU WTAC TELECOM	신설 실설(매년 1일) 개선(세계 : 매4년 지역 : 매년순번제)	ITU의 상근직원 정부, ROAs & 제조업체 고위직 체신부, 연구소 ROAs & 제조업체 중심

1) 각기관별 참여자격 혹은 대표단(delegation)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 정부대표(delegate), ROAs 혹은 정부를 대신할 ROAs(representatives)의 경우에 따라 자문(advisor), 외교관(attaches) 및 통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ITU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ENTITIES)은 재정 혹은 발전관계 기관, 전기통신 문제를 다루는 다른 기관, 지역 및 다른 국제 전기통신 관련 재정 혹은 개발 기구 등이 있다. (협약 7D조)

2) 기존 WATTC의 주기는 약15년이었음(예, 1958, 1973, 1988)

체제 개편에 따른 인적 및 재정적 측면의 단기적 변화는 거의 없지만<sup>86)</sup>, 선출직 직원의 數는 총 9인에서 14인으로 증가<sup>87)</sup>하게 된다. 한편, 국·내외 통신환경

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관심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sup>88)</sup>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sup>89)</sup>으로 해석할 수 있다.

86. 내부 급수별(선출직, D,P, & G급) 변화는 있으나 총 직원수는 1992년과 1993년이 811인으로 동일하고 예산(수입 & 지출) 역시 1992년 대 1993년(144,145,000 Sf 대 146,226,000 Sf)을 비교할 경우 일부 인건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크지않음. Documnt CA47-7330, Budget of the ITU for 1993, 17 July 1992.

87. 

개편전	9인 (예, 사무총장, 사무차장, CCITT 및 CCIR의 위원장(2), IFRB 위원(5))
개편후	14인 (예, 사무총장, 사무차장, 3분야(전파통신, 표준화, 개발)의 국장(3), RRB 위원(9))

88. Y.Beigbeder (1990), *op.cit.*, pp.11.4 / 5-6.

89. 정부(즉, 주관청)을 제외한 RPOAs & SOIs가 CCIR와 CCITT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ITU에 개별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1989년 당시 9,862,240 Sf이었으며, 이외 관련 기구들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ITU의 구조 및 기능의 개편이라 함은 '制度(regime)'로서의 ITU-즉, 국제법적(de jure)으로 구속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ITU의 최고 기본법인 國際電氣通信 및 協約-를 개정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향후 下位 개념의 각종 規則과 임의적 법규이지만 회원국 사이에 실질적(de facto)으로 적용 및 이용되는 標準, 決議 등 향후 1-2년간 각종 규정의 연속적인 개정 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셋째, 예상되는 연속적인 ITU 관련 법규의 개정은 곧 개편된 각종 '議會(conference)'를 통해 실시된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3년 3월 개최되는 제 1 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서는 標準(혹은, 勸告)을 제·개정할 뿐 아니라 표준화 분야의 내부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및 운영방안(Working Method)을 개정하게 되며, 11월 개최되는 제 1 차 세계전파통신학회 및 전파통신총회에서는 현재 감소되고 있는 電波規則의 재고 및 관련 勸告를 각기 개정하게 된다. 또한, 1994년 初에 개최될 제 1 차 세계개발회의에서는 다른 분야와 같이 구속력있는 법규를 제정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決意를 채택하여 각국의 통신 개발 활동에 방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APP에서 개정된 현상 및 협약 역시

1994년 Kyoto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재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考際은 결국 ITU가 유엔 및 다른 유엔 전문기구와 비교하여 다음 <표 3>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 5.2. 效率的 活用方案

실제, ITU 구조 및 기능의 개편은 벌써 국내의 전기통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한 예로, 1980년대 후반기부터 신설·강화되기 시작했던 국내 및 지역 표준화기구(예, TI, TTC, ETSI 등)들의 모임이었던 지역간 전기통신표준화회의(Inter-regional Telecoms Standards Conference)가 ITU의 표준화 분야 산하에 신설될 자문분(TSAG)을 중심으로 국내 및 지역 표준화기구들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합의를 하고 해체된 것에서 증명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ITU의 개편에 따라 한국통신기술협회 및 ETRI 등 유관기관의 구조 및 연구 과제가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기구-특히, ITU 자체에 대한 관련 연구의 고찰도 중요하지만, 동 기구의 主權인 회원국(즉, 주권 국가)이 국내외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환

표. 3 ITU의 특성

① 실용적(feasible)	ITU의 目的 및 機能은 인류의 평화유지와 같이 理想的인 구호보다는 통신 시설 개발 및 주파수 할당과 같이 실용적 성격이 강함.
② 상업적(commercial)	ITU의 制度-즉, 規則(예, ITR)은 국가간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勸告(즉, 標準)는 민간업체의 상품의 생산과 직접 연계되며, 또한 각종 자문기관을 설립하여 민간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시도.
③ 안정적(stable)	ITU의 體制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회원국 자체의 분담금 외 각종 관련기관들의 참여 제고를 통한 특별 기금의 조성, 출판물 판매 수익, 또한 TELECOM 행사를 통한 수입 등으로 財政的인 안정성 유지.
④ 비정치적(less politicized) & 전문적(professional)	ITU의 體制-특히, 人的 構成은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전기통신에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진화·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외교관 혹은 정치가 보다는 기술자들의 클럽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임
⑤ 연방제적(federal)	타국제기구가 사무총장 중심의 중앙집권적(centralized)이라면, ITU는 각 분야의 국장 및 RRB 위원 중심의 자치제 혹은 분권적(decentralized)인 성격이 강함

용하는 것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다 중요할 수 있다. 後者의 경우를 위해 170여 회원국 가운데 ITU의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회원국의 대응

형태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sup>90)</sup>를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미국형, 유럽형, 일본형, 일부 개도국형 및 한국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표. 4 ITU의 활용에 대한 각종 유형

<p><u>美國型</u></p>	<p>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1960년대까지 羈權國家(center)으로서 국제기구내에서 확보했던 다수의 支持 國家들(peripheries)의 호응은 옳은 반면에, 양대 세력으로 균형을 이루었던 舊蘇聯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부 유럽 및 南美의 지지는 획득 혹은 유지하고 있다.</p> <p>미시적으로는 電波通信, 標準化, 開發 등 ITU의 주요 3대 기능뿐 아니라 理事會에서 주로 검토하는 인사 및 재정 등 세부적인 ITU의 행정 문제에 대해 主人意識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지적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을 가할 수 있도록 정부(국무성 혹은 FCC) 및 민간업체가 專門家(예, 법률가 혹은 기술자)를 고용하여 關連회의에 장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회의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교체·임명되는 정치적 인물인 首席代表<sup>91)</sup>를 전문 이슈별로 보좌하고 있다.</p> <p>그러나, 首席代表 자신이 해당 이슈에 대해 필요시 강하게 제언을 하고 다른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등 자국의 입장 반영 및 관철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92)</sup>.</p>
<p><u>유럽형</u></p>	<p>New York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과 달리 Geneva에 100여년 동안 소재하여 유럽인들의 Club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ITU는 역사적으로 美國보다는 유럽 국가들-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의 활동무대였다.</p> <p>특히 1960년 이전까지 식민지를 소유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다수의 투표권을 갖고 羈權國家로서의 지위를 과시해왔다. 한편, 국가간의 세력이 거의 대등하면서 相異한 통신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서로를 견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 공동체(EC)라는 이름하에 共同 寄稿를 제출<sup>93)</sup> 하여 가능한 단일한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p> <p>이렇게 인적 및 기술 자원이 유사한 국가들끼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단일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동 지역내 협력 강화뿐 아니라 ITU회의의 진행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p> <p>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통과 자본이 있는 만큼 首席代表를 포함한 여러대표들이 ITU의 關連 회의에 일관성 있게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함에 따라 해당 이슈를 스스로 이해하고 분야별로 전문가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p>

90. 동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ITU의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와의 인터뷰, 회의 진행시 각국의 형태 관찰, 그리고 특별히 각국이 ITU를 포함한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업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 설문서를 작성, 각 주관청에 배포한 후 응답을 정리, 비교한 결과임.

91.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ITU의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의 首席은 국가에서 大使(Ambassador)로 임명을 해줌으로서 동 회의에서 美國 그 자체뿐 아니라 대표 자신의 位相을 격상시키는 효과(예, His Excellency로 호칭)를 활용(예, HLC, 관리이사회, APP 등).

92. 수석대표직이 이렇듯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위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타협보다는 대립을 유발하더라도 국가의 훈령 혹은 지시 위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최근 여러 ITU 關連회의에서 미국의 주장이 고립되는 현상이 현저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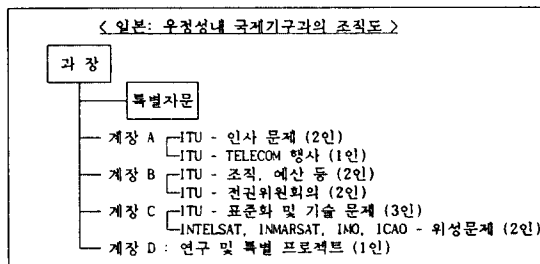
특히, 특정 회의에서 자국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회의 종료후 외무부를 통해 해당 국가와 쌍무적 접촉을 시도하여 자국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등 쌍무 및 다자간 협상을 상호연계시켜 외교적 실력을 발휘 하기도함.

93. APP에는 CEPT(European Conference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슈를 분석하여 의견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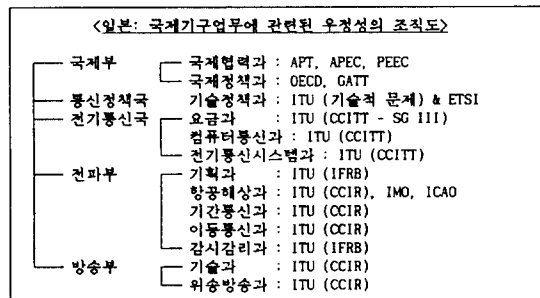


日本型	다른 나라에 비해 체신부 및 관련기관 산하에 ITU를 전담하는 국내 인원 및 조직 <sup>94)</sup> 이 큰 반면에, 담당자의 移職이 빈번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으나, 회의에 파견된 많은 수의 대표들을 활용하여 해당 이슈를 필요시 분담·처리하고 있다.
開途國型	대다수 개도국들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인의 소수 대표가 ITU의 모든 관련 회의 및 활동에 長期間 동안 참여하게 됨에 따라 특정이슈에 대한 배경을 일부 선진국 대표 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의 대립시 해결 혹은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모로코 <sup>95)</sup> 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 보다 강한 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다.
韓國型	ITU에 대한 이해가 고조되고 이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예, 체신부, 외무부, KT, DACOM, KBS, ETRI, KISDI, TTA 외)의 수도 많아짐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참여도 많아 ITU의 각종 회의에 파견되는 대표단수는 적지 않으나 유사한 성격의 회의에 일정한 대표가 참석하기 보다는 아직 '나뉘먹기식' 혹은 회의의 참석을 통한 '해외여행'이라는 인식이 일부에서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성의 축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94.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국제 및 지역 기구의 업무를 세분화시켜 해당 기구별로 계장급 직원 외 2-3인의 직원을 두고 상시체제하에서 해당 의제를 검토·처리하고 있다. :



이외 기술 및 전문적인 문제는 우정성의 다른 局에서 관계 직원들의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조정 및 대응하고 있다 :



95. 모로코를 중심으로 응축될 수 있는 이유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드물게 ITU내 고위직인 IFRB위원으로 장기간 선출되어 왔다는 점과, 이는 특히 Mr. Berrada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현재는 모로코를 대표하여 각종 ITU 관련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회의의 마다 ITU 역사의 산증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음.

ITU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sup>96)</sup>으로서 上記 類型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복합형태가 長期的으로는 이상적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채택하는 것은 현재 거의 어려우므로, 유럽과 일부 개도국의 복합형태가 短期的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바람직할 것 같다<sup>97)</sup>.

### VI. 제 언

사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통신분야도 자율화 혹은 민영화 정책을 도입<sup>98)</sup>함에 따라 체신부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통신사업자, 연구소 제조업체 등 통신 관련 많은 기관<sup>99)</sup>이 ITU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다. 물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U의 개편에 따라 참여 기관이 다원화 및 확대되었고, 이들 국내 유관기관의 대응 및 활용 방안도 분야별, 하의 및 제도별로 각기 相異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제기구(특히, ITU)와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간의 일반적인 상호관계 혹은 활용방안을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유관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각종 관련 會議에 참여하여 전문적 통신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 및 활용도 중요하지만 制度 및 體制的인 차원에서 행정, 외교, 연구 및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ITU의 구조 및 기능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국내 상시 대응 체제의 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이 시급함도 아울러 제언해 본다.

### 참 고 문 헌

1. Beigbeder, Y. (1990), 'Administrative and Structural Reform in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Family' in C. de Cooker (ed.),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Law and Management Practices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London: Martinus Nijoff), pp.11 /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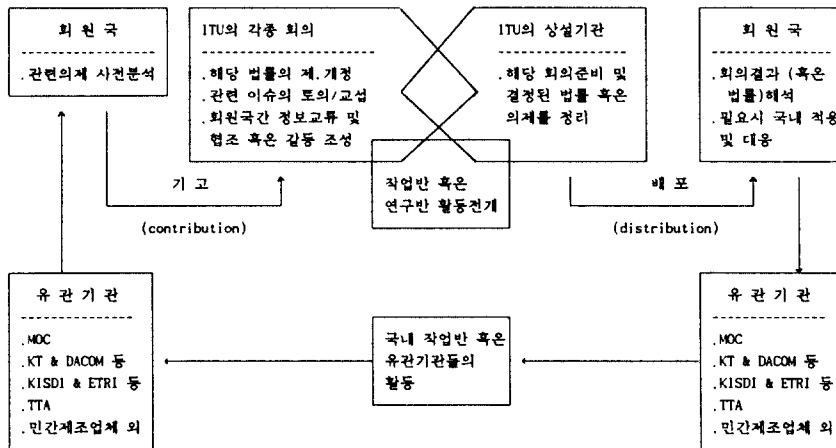


그림 3. ITU와 회원국의 유기적 관계

96. 김은주 (1993a),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속에 ITU의 위상', '92년 ITU 국내연구단 연구발표회 주제논문, 1993.1. 12.  
 97. 김은주 (1992c), '통신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활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 연구(상/하)', 체신, No.406 & 407, pp. 60-65 & 65-69.  
 98. E.J.Kim (1992d), 'Changing telecommunication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Telecommunication Journal*, Vol.59, No.12, pp.573-586.  
 99. E.J.Kim (1993b),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17, No.3, (forthcoming).

2. Bertrand, M. (1989), *The Third Generation World Organization*, (London : Martinus Nijhoff).
3. Bowett, D.W. (1982), *The 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London : Stevens & Sons Ltd.).
4. Codding Jr., G.A. (1952),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 Experi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Leiden : E.J.Brill).
5. Codding Jr., G.A. & Rutkowski, A.M. (1982),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 Changing World*, (London : Artech House Inc.).
6. Codding Jr., G.A. (1984), 'Politicization of the ITU : Nairobi & After' in V.Mosco (ed.), *Policy Research in Telecommunications*, (New York : Ablex), pp. 436-8.
7. Deusch, K.W. (1968),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 Prentice-Hall).
8. Document 40, APP-92, (Geneva : ITU), December 1992.
9. Document 77, APP-92, (Geneva : ITU), December 7 1992.
10. Document 154, APP-92, (Geneva : ITU), December 1992.
11. Document AP X-23, Report of the Ad Hoc Group, the Xth CCITT Plenary Assembly, (Geneva : ITU), May 1992
12. Document JCI-1 / 9(Rev.), January 21 1993.
13. Document CA 47-7330, Budget of the ITU for 1993, (Geneva : ITU), July 1992.
14. ETSI (1992), *Reference Documents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Technical Basis for Regulations ETSI Technical Reports, GSM Specifications*, (Cedex-France : ETSI).
15. ITU (197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Malaga-Torremolinos.
16. ITU (198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Nairobi.
17. ITU (1988),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Melbourne.
18. ITU (1989),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to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ice.
19. ITU (1990), *Radio Regulations*, Geneva.
20. ITU (1991a), *Staff Regulations & Staff Rules*, Geneva, 1969, (reissued).
21. ITU (1991b), *Staff Regulations & Staff Rules for Elected Officials*, Geneva, 1974, (reissued).
22. ITU (1991c), *Tomorrow's ITU: The Challenges of Change*, Geneva.
23. ITU (1992), *Final Acts of the Additional Plenipotentiary Conference*, Geneva.
24. Jacobson, H.K. (1974), 'ITU: A pot pourri of bureaucrats and industrialists' in R.W.Cox & H.K.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25. Katzenstein, P.J. (1975),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 Some long-term trends and recent chang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9, No.4, pp. 1021-34.
26. Kaufmann, J. (1988), *Conference Diplomacy: An Introductory Analysis*, (The Netherlands : Martinus Nijhoff.)
27. Keohane, R.O. & Nye, J.S. (1974), 'Transgovernmental rela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Politics*, Vol.27, No.1, pp.39-62:
28. Keohane, R.O. (1982),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2, pp.325-355 :
29. Keohane, R.O. & Nye, J.S. (1987),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is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No.4, pp.719-753.
30. Keohane, R.O. & Nye, J.S. (1989), *Power and Interdependence*, 2nd ed., (Boston : Little Brown).
31. 김은주 (1990a), '한국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상호연계성 고찰,' 인간 커뮤니케이션 사회구조, 보성사, pp.174-205.
32. Kim, E.J. (1990b), *Dynamic Interlinka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rough Evolving Telecommunications Issue-Structures*, Ph.D. Thesis, (London : The City University).
33. 김은주 (1991a/b), 'ITU의 고위위원회 현황과 국내대응' ( I / II ), '국제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No.19 & 20, pp.3-19 & 3-38.
34. 김은주 (1991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구조조정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35. 김은주 (1992a), 'ITU 기본법 개정 및 국내대응' (상/하), 한국통신 : 경영과 기술, No.6 & 7, pp. 45-53 & 83-93.
36. 김은주 (1992b),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기

부록 1. 전기통신관련 주요 국제 및 지역기구명칭 및 특성비교

기 구	명 칭	성 격 및 관 련 부 분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 아시아지역 정부간기구 - 전기통신 기술개발 및 협력
CEPT	Conference of European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 : 유럽 우편 및 전기통신주관청회의	- 유럽지역 정부간기구
CITEL	Conference on 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 : 미주간 전기통신회의	- 미주지역 전기통신개발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nstitution : 유럽전기통신표준화협회	- 유럽지역 비정부간 기구 - 전기통신 표준화
EUTELSAT	European Satellite System : 유럽위성 기구	- 유럽지역 비정부간 기구 - 위성통신
GATT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riff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 일반적 국제기구 - 전기통신서비스관련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 정부간 위성기구 - 국제위성통신서비스(특히, 해상선박간, 선박과 육상간의 위성통신)
INMARSAT	Internai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 정부간 국제기구 - 국제위성통신서비스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정부간 국제기구 - 구거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수송의 모든 기술적 문제에 관한 규칙과 관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비정부간 표준화기구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 정부간 국제기구 - 전기통신 문제를 총괄하는 UN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 정부간 국제기구 - 거시적 및 미시적 경제분야 정책 제시 및 지침 제정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유엔개발계획	- UN기구 -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 본법 개정 및 한국의 대응방안, 통신개발연구원.
37. 김은주 (1992c), '통신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활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 (상/하), *채신*, No. 406 & 407, pp.60-65 & 65-69.
  38. Kim,E.J. (1992d), 'Changing telecommunication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Telecommunication Journal*, Vol.59, No.12, pp. 573-586.
  39. 김은주 (1993a),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속에 ITU의 위상,' '92년 ITU 국내연구단 연구발표회 주제논문, 1993.1.12.40. Kim,E.J. (1993b),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17, No.3, (forthcoming).
  41. Krasner,S.D.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D.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 (London / Ita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42. Krasner,S.D. (1985), *Structural Conflict: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3. Kratochwil,F. & Ruggie,J.G. (1986), 'International organization : A state of the art on a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0, No.4, 753-775.
  44. McKnight.L. (1987), 'Technical standard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45. Noveotny.E.J. (1988), 'Global Networks and Global Politics :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an international regime,' Paper presented to the XIVth World Congress of the IPSA, Washington,D.C..
  46. Perrow,C. (1976), *Organizational Analysis: A Sociological View*, (London : Tavistock).
  47. Tarassenko,S & Zacklin,R (1990), 'Independence of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in C.de Cooker (ed.), *op.cit.*, pp. III.1 / 1-15.
  48. Williams,D. (1987), *Specialized Agencies & the UN ; The System in Crisis*, (London : C.Hurst & Company).
  49. 채신부 (1992),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 ITU 제 47 차 관리이사회.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직원 여러분과, 설문 및 인터뷰에 응해주신 각국의 주관청 및 통신사업자 대표, 채신부 관계 직원여러분, 그리고 안진우 연구원, 김병진 연구원, 이가돈 조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김 은 주

- 1993년 졸업 : 學士-新聞放送學 (한국외국어대)
- 1985년 졸업 : 碩士 1-新聞學 (서울대)
- 1987년 졸업 : 碩士 2-通信(The City University, London)
- 1988년 11월 : 자문 (정부 대표)-ITU 세계전신전화 주관청회의 : WATTC
- 1988년 ~89년 : 연구조교-The City University (London)
- 1989년 ~90년 : 강사 (대학원)-The City University (London)
- 1990년 졸업 : 博士-通信(The City University, London)
- 1990년 ~현재 : 초빙연구원 (통신개발 연구원) 특별자문 (채신부) 연금위원회 위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1991년 ~92년 : 전문가 (정부대표)-ITU 추가전권 위원회의 전문가 초안반
- 1992년 6월 : 자문 (정부대표)-ITU 아·태지역회의
- 1992년 6월 ~7월 : 자문 (정부대표)-ITU 제 47 차 관리이사회
- 1992년 12월 : 자문 (정부대표)-ITU 추가전권위원회
- 1992년 3월 : 자문 (정부대표)-ITU 제 1 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